

## 제조물책임(PL)에서의 착오(錯誤)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579-3291 ksrha@esak.or.kr

착오(error)란 착각에 의한 잘못이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인식(認識)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정의하여, 착류(錯謬) 혹은 오착(誤錯)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이 일정한 의사에 기(基)한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착오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형법상의 고의에 관한 착오가 중요하다.

고의(故意)는 반 뜻을 가지고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법률에서, 남에게 대하여 권리침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과실(過失)과 대칭된다. 범 죄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즉 죄를 지지를 뜻의 범의(犯意)와 통한다.

민법상, 의사표시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 즉,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表意者)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 즉 심리유보나 동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착오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 첫째, 표시상의 착오로,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이다.
- 둘째, 내용상의 착오로,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이다.
- 셋째, 동기, 즉 연유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는 동기에 틀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은 착오의 태양(態樣)에 의하지 않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그 착오가 없으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인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객관적 중요성을 말한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보통 일반인이 가려야 할 주의를 지나치게 결(缺)하였음을 말한다.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착오의 적용범위는 재산행위에 한하고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민법 제 815조와 제88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행위 중에서도 행위의 외형에 신뢰하여 대량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상법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착오의 법리가 배제되는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착오는 부지(不知:ignorance)와 오인(誤認:mistake)을 포함한다. 형법에서는 어떠한 착오가 있으면 고의(책임)을 조각하는 바가 문제가 된다.

사실의 착오는 범죄사실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 착오가 객관의 성질에 관한 경우를 타격의 착오 즉 방법의 착오

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한 경우를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한다. 또, 사실의 착오는 착오가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 내의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이나, 아니면 상이한 구성요건 사이에 걸치느냐에 따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사실의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는냐에 관하여,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인식한 바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체적 부합설이 있다. 그리고 범정의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 있어서 인식과 사실이 부합되면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정적 부합설, 곧 구성요건적 부합설이 있다. 또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면 족(足)하다고 하는 추상적 부합설이 있다.

타격(打擊)의 착오(錯誤)란 방법으로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를 방법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갑을 살해할 의사로서 갑을 향하여 권총을 발포한바, 갑이 아니라 옆에 있던 을이 사살된 경우인데, 이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한다. 또는 갑집의 유리창을 깨뜨릴 의사로서 돌을 던졌던 바 돌이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을에게 맞아 부상케 한 이른바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이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허용된다

고 오신(誤信: misbelief)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의 착오가 있어도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도,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벌해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의 해석은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종래의 학설에서는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근차에는 이 구별이 부정확하다고 하여, 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 법률적 착오를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상의 착오'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해지고 있다.

구성요건적 착오(構成要件의錯誤)는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 사실적(기술적) 요소이든 규범적(의미적) 요소이든 간에, 이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의 사실의 착오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금지(禁止)의 착오는 행위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즉, 금지된다는 점에 관한 착오인데, 이러한 의미에서는 종래의 법률의 착오와 같다.

형사소송법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비약적 상고(飛躍的上告) 이유가 된다. 법령적용의 착오라 함은 의율(擬律)의 착오라고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적용의 착오도 포함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과오가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이 달리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사실오인이라 한다.

사실오인(事實誤認)이란 법원의 증거의 채부(採否) 또는 그 평가를 그려쳐서 사실인정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인정이란 일정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거에 기(基)하여 확립하는 판단작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오인은 그러한 판단작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사실오인은 어떠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려치거나 또는 경험칙을 그려치는 것, 또는 증거의 선택을 그려치는 것, 증거의 불충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긴다.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항소이유로 된다. 또,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